

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180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소송구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권주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4,168,6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7. 대전 대덕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와 이 사건 마트의 수산코너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마트와 이 사건 마트의 수산코너를 각자의 대표로 운영하고, 그 출자액은 기존의 출자금으로 한다.

피고 출자비율 66.66%

원고 출자비율 33.33%

제2조(경영의무)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슈퍼를 운영한다. 슈퍼 운영품목은 공산품, 야채, 청과, 건어, 정육식품, 육가공제품(수입육포함), 일반부가가치세 면세품 등 전체를 판매하며 경영상 미수금은 책임지며 이익금은 미수금 공제 후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수산, 육계 코너를 운영하며 생선제품, 육계제품 등을 판매하며 경영상 미수금을 책임지며 이익금은 미수금 공제 후 지급한다.

※ 특약사항

원고와 피고의 미수금은 2013. 1. 1.부터 각자 책임지기로 한다.

제3조(이익분배의무)

원고와 피고는 2016. 7. 1.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경비, 종합소득세 등까지 공제한 순이익 금액을 배분한다.

단 피고는 야채, 청과, 건어물, 정육 재고금액에서 미수금을 차감한 후에 이익금 미수금을 각자 정산한다.

공산품은 전체 재고금액에서 미수금을 차감하고 이익분배금은 투자비율로 한다.

원고는 생선, 육계 재고금액에서 미수금을 차감한 후에 이익금 미수금을 각자 정산한다.

공산품은 전체 재고금액에서 미수금액을 차감하고 이익 분배금은 투자비율로 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의 경우 갑, 을의 이의가 없으면 기간은 자동 5년씩 연장한다.

동업자 중 동업의 해지요구가 있을 시는 매장내의 모든 시설 권리금은 서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분 매각은 동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이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동업 해지가 없는 것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토지, 건물) 피고의 지분 금액은 (583,500,000원)으로 정하고, 피

고의 지분 금액은 (233,500,000원)으로 한다.

또한 고객 포인트 적립금 공제는 원고와 피고는 투자비율로 차감하기로 한다.

동업자가 동업 해지 요구할 시 정산은 피고는 야채, 청과, 건어물, 정육코너, 재고금액에서 미수금액을 차익, 차감하고, 공산품은 재고금액에서 공산품 미수금액 중 투자비율로 차익, 차감 후 지급하고, 원고는 수산물, 육계 재고금액에서 미수금액을 차익, 차감하고 공산품은 재고금액에서 공산품 미수금액 중 투자비율로 차익, 차감 후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원고와 피고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원고와 피고의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며, 원고와 피고는 기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동업관계를 종료하자고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 15.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동업지분을 양도하되, 피고는 이 사건 동업체의 대출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8. 1. 15. 등기권리증을 D에 양도·양수하고,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는다. 위 40,000,000원 입금 확인시 양도·양수한다.

지급받는 순간부터 원고, 피고의 채권·채무는 소멸된다.

거래처 미수금은 원고가 정산한다.

원고가 수산, 육계 운영시 냉장고 고장시 개인적으로 수리하고 경영한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허락을 얻어 그 이후부터 2020. 7.경까지도 이 사건 마트의 수산코너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의 동업기간 중 2017. 4.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운영한 수산, 육계코너의 2017. 4. 3.부터 2017. 12. 29.까지의 매출액 457,053,508원에서 매월 공과금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한 2,510,000원의 9개월 분 22,590,000원(= 2,510,000원 × 9), 2017. 10. 추석 명절 선물 및 상여금 2,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2,263,508원(= 457,053,508원 - 22,590,000원 - 2,200,000원)이 정산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338,094,827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94,168,681원(= 432,263,508원 - 338,094,8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6. 7.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마트 및 그 수산코너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동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의 허락을 얻어 원고가 2020. 7.경까지 이 사건 마트의 수산코너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원고가 운영한 수산, 육계 코너의 매출액에서 카드 수수료, 적립 포인트 금액, 음식물 수거비, 일반 관리비, 보험료, 홍보비 등을 종합한 비용을 매주 공제하여 정산하였고, 그 정산금도 매주 지급하였다. 또한 위 공제 비용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월 2,510,000원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따라 변동되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마트의 경리 직원이 매주 각자의 매출금과 그에 대한 비용을 정리하여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가질 정산금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로부터 약 10일 후에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의 동업 기간은 물론 원고가 피고가 허락을 얻어 수산코너를 맡아서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여 2016. 7.경부터 2020. 7.경까지 4년 동안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그중 일부 기간에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산 중 특정 기간의 정산만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③ 원고는 매주 정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도중에 잘못된 정산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2년 이상 경과한 2020. 8.경 이후에서야 피고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매월 공제 비용이 2,51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매주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토대로 비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매월 약 3,310,000원의 비용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위와 같이 2,51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서 동업 관계에서의 채권 ·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준